

거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28
----------	-----------

제출연월일	2007. 9. 18.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본인과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함으로써, 우리군민들이 나라 사랑정신을 존중하게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안 제5조, 제6조)
 - 중요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 중요 행사시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게재
 -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추모일 행사시 위문
 -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 다. 보훈단체 지원(안 제7조)
 - 보훈단체의 운영 및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
 -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 순례사업
 - 보훈단체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 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안 제8조)
 - 거창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 감면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5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나. 예산조치 : 2007년 당초예산 기확보(105,600,000원)
-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2) 입법예고(2007. 6. 1. ~ 6. 20.) 결과 : 의견없음

거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련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우리 군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면서 국가보훈관련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우리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중요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군수는 희생·공헌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보훈관련 기념일·추모일 등 행사개최 시 보훈단체 위문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6.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및 보훈의 달 행사 시 희생·공헌자의 업적선양

제7조(보훈단체 지원) ①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훈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단체의 운영 및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 순례사업
3. 보훈단체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제8조(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하여 거창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를 감면한다. 다만, 당해 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관리·운영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제9조(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 사업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